

HS 2028 개정으로 본 폐기물 품목분류 변화

[품목분류 동향]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유해 폐기물·폐타이어까지,
주요 개정사항 점검 (24p)

[이주의 초점]

“관세환급은 편리하게, 해외 직구 명의도용은 차단”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바뀐다 (4p)

[한눈에 보는 미국 관세]

트럼프 행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관세조치 주요 특징과
대미 수출 시 관세 적용 방식 (19p)

[위클리 뉴스]

한·브라질, 5년째 멈춘 메르코수르 협상 추진...
칠레와 FTA 현대화도 시동
EU,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 (7p)

[오피니언: 베트남 통관]

원산지 검증 강화 나선 베트남 세관,
이제 생산공정까지 본다 (15p)

[일본 관세 리포트]

여행자 4,200만 시대, 달라진 일본의 국경관리
“입국심사·세관신고 연계 가속화” (11p)



※ AI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취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서준식 sjs1216@kctdi.or.kr

마케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8월 3일(통권 제2189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관세환급은 편리하게, 해외 직구 명의도용은 차단”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바뀐다

관세행정실무해설

- 19** 한눈에 보는 미국 관세
- 21** 질의응답사례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 확인

07 Weekly News

일본관세리포트

- 11** 여행자 4,200만 시대, 달라진 일본의 국경관리
“입국심사·세관신고 연계 가속화

품목분류동향

- 24** 품목분류해설
HS 2028 개정으로 본 폐기물 품목분류 변화
- 33** 세번 바로잡기
식물성 추출물일까? 마테 추출물의 HS Code

오피니언

- 15** 시선, 베트남 통관
이여람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원산지 검증 강화한 베트남 세관,
이제 생산공정까지 본다
-

“관세환급은 편리하게, 해외 직구 명의도용은 차단”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바뀐다

면세품 국내 교환 허용하고 관세환급 증명서 자율발급,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기업은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직구 과정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관세청은 2026년 7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수출입기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 4개 분야 10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 해외 직구 주문에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우선 해외 전자상거래물품을 주문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함께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8월 15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관세정보시스템에 검증을 요청하면, 시스템이 해당 수입화주에게 일회용 인증번호를 발급한다. 통관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는다. 다만 회원 본인인증 등 관세청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은 협력인정업체를 통한 주문 가운데 주문자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일회용 개인통관부호와 인증번호가 제공돼 주문자가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최신 상태로 현행화한 이용자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수입화주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납세자 등 국민 편의 위해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국내로 반입한 면세품을 교환하려면 입국할 때 세관에 휴대품신고를 하고, 재출국할 때 교환품을 받아야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교환할 경우 입국 시 휴대품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교환품은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택배·우편을 통해 받으면 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면세품도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교환 가능 기간 등은 해당 면세점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으로 해외여행객의 면세품 교환 편의가 높아지고 면세업계의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검사비용은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전산장애·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기한을 최대 6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과 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늘었다. 여행자 휴대품·우편물·이사화물 등에 부과된 관세 등 제세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6월 1일부터 농협은행 1곳에서 농협은행·우리은행·우정사업본부 3곳으로 확대됐다. 관세청은 납세자 스스로 이용하기 편리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타행 이체 시 부담했던 수수료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면세품 환불 시 부과 취소 절차도 도입됐는데, 가령 종전에는 여행자가 입국할 때 자진신고한 물품을 세금 납부 전에 반품하더라도 세금을 먼저 납부한 뒤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4월 6일부터는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한 면세품을 환불할 때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이 적용 대상이다.

■ 수출입기업 지원으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수출기업들이 관세환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세환급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가 신설됐다. 종전에는 평균세액증명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업체가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제13조의2 신설에 따라 7월 1일부터 세관장이 지정한 자율발급업체는 개별 신청·심사 없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해야 한다.

자가용 보세창고에는 원칙적으로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만 반입할 수 있었다.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선박·항공기 수리용 예비부분품과 부속품이 공급업체의 자가화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관련 공급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사전심사와 관련한 수수료 체계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분석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에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개정예에 따라 3월 20일부터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에만 물품당 3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무료로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원산지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원산지 사전심사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승객예약자료 정확도 높이고 소액화물 상표권 침해 시 신속 대응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국경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항공사가 승객예약자료 전체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나목과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개정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필수 제출항목 15개 가운데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항목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승객예약자료 제출 정확도를 높여 마약·테러 등 고위험 여행자를 선별하는 관세국경 위험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도 소액화물에 한해 간소화됐다. 적용 대상은 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이다. 종전에는 상표권자가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하고 법원 제소 사실을 입증하는 등 7단계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의2 신설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침해 의심 사실 통보, ▲상표권자의 침해 입증자료 및 수출입자의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통관보류 여부 결정 등 3단계로 줄었다.

실제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여러 건의 소액화물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통보를 받아도, 통관보류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커 요청 자체를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담보 제공 등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이 줄어 소액·다건의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과제 가운데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관세환급 증명서 자율발급,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대상 확대, 승객예약자료 과태료 기준 확대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해외 전자상거래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는 8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증진과 수출입 기업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세국경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브라질, 5년째 멈춘 메르코수르 협상 추진... 칠레와 FTA 현대화도 시동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7월 26~29일)을 계기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메르코수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포함] 간 무역협정(TA, Trade Agreement) 협상이 5년여 만에 재개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과 브라질은 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편, 철강 수입규제와 검역 등 통상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재추진, 핵심·전략광물 공동성명 채택, 산업기술 협력 MOU 체결, 민간 협력 확대 등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7월 29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브라질 핵심 및 전략광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출처: 산업통상부)

한·브라질 정상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여타 메르코수르 당사국의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올해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한·브라질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정상회담 이후 통상교섭본부장

과 메르코수르 4개국 통상장관 간 협의를 이어왔으며, 5년 이상 중단된 협상의 재개·타결 가속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협상 재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무역관의 2025년 무역통계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은 대한민국의 21번째 교역국(2024년 23위)이며, 대브라질 수출액은 약 77억달러(선박 대규모 납품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48% 증가), 수입액은 약 66억달러였다. 주요 수출품은 전자기기·TV·VTR이며,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에너지, 광물 등 원자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 28일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엘리아스 호자 장관과 만나 철강 수입규제와 쿼터 운영, 현지 행정·제도상 애로 등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지난 2월 체결한 ‘통상·생산통합 협약’과 7월 10일 열린 제1차 경제·통상위원회를 통해 산업·생산 협력, 핵심광물 가치사슬 통합,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등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시장 접근과 관련해서도 오는 8월 브라질 기술 실사를 시작으로 브라질산 소고기 위험평가 절차를 추진하고, 산타카타리나주 이외 지역의 브라질산 돼지고기도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수입협회는 소고기 수입선을 브라질로 다변화하기 위해 검역 협상과 무역협정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히토류·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제도화

양국은 또한 ‘대한민국 산업통상부 및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간 핵심전략광물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핵심·전략광물 협력 방향을 양국이 공동문서로 명시한 첫 사례로,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과 현지 가공·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공동번영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여기에 상파울루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양국 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제조·인프라, 첨단산업, 소비재·유통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으며, 다수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교역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고, 이 대통령은 관세·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창구를 통해 애로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라질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칠레를 공식 방문해 통상·산업 협력 행보를 이어갔다. 양국은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를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AI), 청정기술, 공급망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맞춰 현대화하기로 하고, 구리·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과 상호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산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통해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칠레는 세계적인 구리·리튬 생산국이자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갖춘 통상 거점인 만큼, 정부는 이번 방문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EU,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 2028년 3월까지

유럽연합(EU)이 한국으로 운송되는 러시아 사할린 II 프로젝트산 액화천연가스(LNG)를 대러시아 제재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장기계약이 끝나는 2028년 3월까지 사할린 II LNG 도입 과정에서 EU 제재로 인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EU 이사회가 7월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에 관한 예외규정을 담은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할린 II 프로젝트에서 생산돼 한국으로 운송되는 LNG에는 2028년 3월 31일까지 관련 EU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으로 운송되는 물량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 II 프로젝트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LNG를 국내에 도입해 왔다. 계약기간은 2028년 3월까지이며 연간 계약물량은 150만톤이다. 거래조건은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이다.

해당 LNG 수송선박에 대한 원보험은 국내 보험사가 제공하지만, 대규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재보험에는 EU와 영국 소재 보험사가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재보험을 비롯한 관련 서비스가 대러 제재로 제한되면 잔여 계약물량 약 200만톤의 국내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잔여 물량은 약 1조 7,500억원 규모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채택한 제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와 관련해 EU 기업이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계약에는 해당 조치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EU는 이번 제21차 제재 패키지에 대러 제재가 파트너국의 에너지 공급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할린 II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EU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내 일일 LNG 판매량의 20일분을 웃도는 잔여 물량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할린 II LNG는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은 데다 한국과 편도로 4일 소요돼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다만 LNG 운송의 재보험 구조에 영국 소재 보험사도 참여하고 있어 관련 위험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사할린 II 계약물량을 계약 종료 시점까지 차질 없이 도입하려면 영국의 대러 제재에서도 예외 적용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EU가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과 에너지 수급 여건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 사례를 영국과의 협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영국정부 및 관계기관과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이어가며 관련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EU의 예외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민관 상시 협의체계를 통해 기업 애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고병원성 시로 막혔던 닭고기·계란, 홍콩 수출 재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0일 홍콩과 신선 가금제품 수출 재개를 위한 검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홍콩 가금제품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발생 시·군 단위에서 중단돼 왔으며, 농식품부는 일부 지역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올해 3월부터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EHD,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와 수출 재개를 위한 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발생 시·군 단위로 적용되던 수출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기존에 홍콩정부에 등록된 국내 작업장(닭고기 46개소 등)에서 생산한 가금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을 거쳐 바로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으며, 신규로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은 검역본부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4년 기준 가금제품의 홍콩 수출 실적은 닭고기 35톤(7만달러), 계란 1,846만개(326만달러)로 집계됐다. | 서준식 기자 |

물류비 뛰어도 가격은 그대로… 수출기업 3곳 중 1곳 운임 급등분 떠안는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운임이 급등했지만 수출기업 3곳 중 1곳은 늘어난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비용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떠안으면서 수익성 악화도 심화하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는 7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유가 변동에 따른 수출 물류 애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수출 제조기업 21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3.1%인 182개사가 올해 상반기 가장 큰 물류 애로로 '운임 상승'을 꼽았다. '원자재·부품 조달비용 상승'을 지목한 기업도 56.6%인 124개사에 달해 물류비와 원가 부담이 동시에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7월 24일 기준 3,062포인트(pt)로, 중동 전쟁 이전인 2월 27일의 1,333pt보다 약 2.3배 상승했다. 지난해 최고치인 2,240pt와 비교해도 약 1.4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운임과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 기업의 78.1%인 171개사는 비용 증가분 가운데 제품 가격에 반영한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답했다. 특히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가격 전가율 0%' 기업은 32.9%인 72개사로 집계됐다. 반면 비용 증가분의 80% 이상을 가격에 반영한 기업은 5.5%인 12개사에 그쳤다.

한편,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전쟁 직후보다 낮아졌어도 기업의 물류비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발생한 유가 상승분이 3분기까지 시차를 두고 청구되는 데다 유류할증료와 국내 내륙 운송비 인상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 서준식 기자 |

일본 관세 리포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2024년 일본관세협회(JTAS, Japan Tariff Association)와 관세, 무역 분야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국의 관세 제도와 정책 관련 정보 및 도서를 교환하고 있다. 본지는 일본관세협회와 출판물교류 사업을 통해 월간 <무역과 관세>에서 주제를 발굴한 후 추가 조사, 분석을 거쳐 '일본 관세 리포트'로 소개하고자 한다.

여행자 4,200만 시대, 달라진 일본의 국경관리 “입국심사·세관신고 연계 가속화”

디지털 입국체계 구축해 여행자 편의와 세관 검사 효율성 동시에 높여

일본정부는 올해 3월 27일 제5차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방일 외국인 여행자 6,000만명과 여행소비액 15조엔(약 133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는 약 4,268만명으로 추산됐으며, 입국 공항도 도쿄·오사카권에서 지방공항으로 점차 분산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국제 크루즈 부문에서도 방일 크루즈 여행객을 코로나 19 이전 최고 수준인 250만명까지 회복시키고, 2030년까지 외국 크루즈선 등의 일본 항만 기항 횟수를 3,000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 연도별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 추이(단위: 만명) ●



출처: 재무성 관세국(자료: 일본정부관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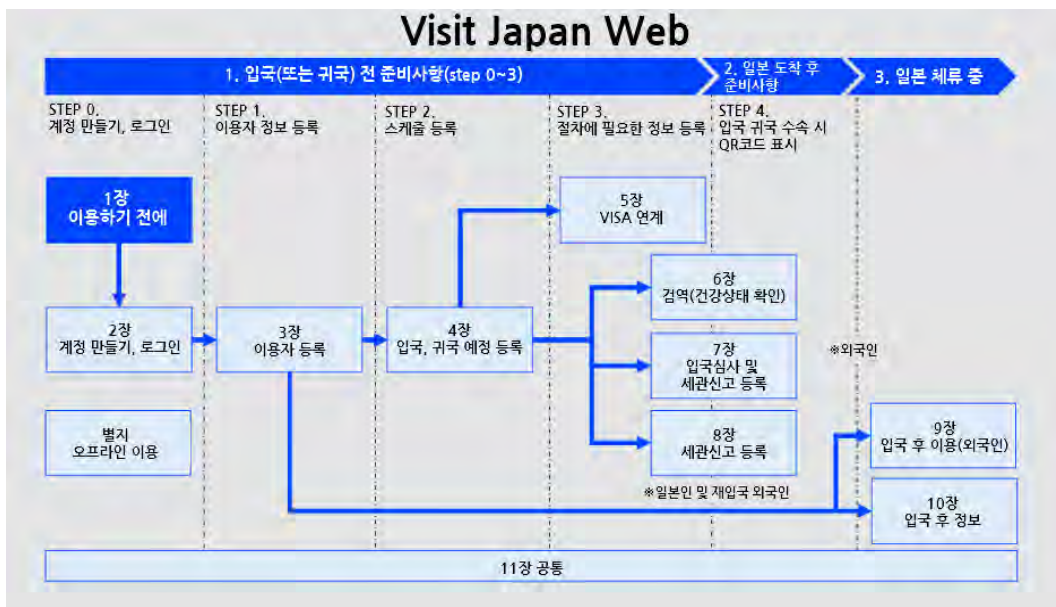
Visit Japan Web과 공동 키오스크 연계

이렇게 일본을 찾는 여행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세관 인력 증원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6월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관세행정의 주요시책현황’에 따르면 2025년도 세관정원은 1만 255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일본 세관은 한정된 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엄정한 국경단속과 신속한 통관을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증가하는 여행자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절차의 디지털화와 검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입국수속 서비스인 ‘Visit Japan Web(이하 VJW)’과 공항에 설치된 ‘공동 키오스크’가 있다.

공동 키오스크는 2024년 1월 하네다공항 제2터미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비와 운영방식을 개선한 뒤 2025년 4월 간사이공항 제1·2터미널, 하네다공항 제2·3터미널 및 나리타공항 제3터미널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같은 해 12월에는 후쿠오카공항으로 확대, 2026년 7월 현재 4개 공항 6개 터미널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1월 31일: 하네다공항 제2터미널에서 공동 키오스크 실증사업을 시작
 2025년 4월: 3개 공항에서 본격 운영
 - 간사이공항 제1·2터미널
 - 하네다공항 제2·3터미널
 - 나리타공항 제3터미널
 2025년 12월: 후쿠오카공항으로 확대



출처: 외교부

일본 디지털청이 운영하는 VJW는 방일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으로 귀국하는 자국민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용자는 일본 도착 전에 여권정보와 여행일정 등 입국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휴대품·별송품 신고 등 세관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등록할 수 있다.

VJW에 사전등록한 정보는 공항에 설치된 공동 키오스크와 연계된다. 여행객은 QR코드와 전자여권을 공동 키오스크에 인식하면 입국심사와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다.

공동 키오스크를 이용한 외국인은 전용 입국심사 창구에서 심사를 받고, 이후 세관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면 안면인식 전자게이트를 통해 세관구역을 통과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두 절차를 연계해 입국심사와 세관신고 과정에서 반복되던 여권 판독과 얼굴 촬영을 줄이고, 여행객의 전체 입국 처리시간을 단축하고자 했다.

QR코드 하나로 입국과 세관신고

일본의 입국절차 디지털화는 여행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세관검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관은 여행자가 사전에 제출한 신고정보를 위험분석과 검사대상 선별에 활용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여행자는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고위험 여행자와 반입물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귀국자에게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도 '신고 없음'을 명시해야 하므로, 여행객 증가가 곧 세관신고 처리량도 함께 증가한다.

VJW와 공동 키오스크의 확대는 이러한 신고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여행자의 대기시간과 세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6년 1월 발표한 '공항·항공정책의 현황'에서 "VJW와 공동 키오스크 연계를 통해 여행자의 편의성 향상과 입국수속 전체의 시간 단축 등을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도 입국절차 디지털화 추진

우리나라도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고 출입국·세관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입국절차 전반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입국 전에는 전자입국신고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공항에서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와 세금 납부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5년 2월 24일부터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 외국인은 대한민국 도착 전에 여권정보와 입국편명, 입국 목적, 국내 체류예정지 등 입국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인 'SES(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 심사대에서 전자여권을 판독한 뒤 지문과 얼굴정보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거치면, 출입국 심사관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입국정보의 사전 제출과 생체정보 기반 본인확인을 연계해 입국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이나 웹을 이용해 휴대품을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QR코드가 생성되며, 여행자는 입국장에서 이를 전용 리더기에 인식시켜 신고서를 제출한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고지서를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별도의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한다. 모든 입국자에게 세관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보다는 신고가 필요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신고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처리하는 구조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전자입국신고, 생체정보 기반 자동출입국심사,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 및 모바일 납부를 통해 입국절차를 단계별로 디지털화하고 있다. 다만 출입국신고와 세관신고가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두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과 QR코드로 연계한 일본의 VJW와는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일본의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구분을 유지하면서 이용자의 중복 정보 제출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현장 절차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일본과 한국의 입국·세관 절차 비교 ●

구분		일본	한국
입국 정보	사전등록	Visit Japan Web(디지털청)	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이용 대상	입국신고 대상 외국인 및 일본인 귀국자	입국신고 대상 외국인
세관 신고	사전신고	Visit Japan Web(디지털청)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
	이용 대상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귀국자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신고 없음'을 포함한 세관신고서 제출	별도의 신고서 없이 '신고 없음' 통로 이용
시스템 연계		VJW에서 입국심사·세관신고용 QR코드를 하나로 통합	전자입국신고와 여행자 세관신고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
공항 현장		VJW의 QR코드와 IC여권을 공동 키오스크에서 판독해 입국·세관신고 정보를 한 번에 제출	입국심사: 여권 제시 세관심사: 앱, 웹에서 발급한 QR코드를 전용리더기에 인식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지금까지 일본의 입국 및 세관신고 절차를 알아보았다. 다음 호[제2190호(2026.8.10. 발행)]에서는 일본 소비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외국인 여행자 소비세 면세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의 즉시면세 방식이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을 거쳐 소비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배경과 주요 절차를 소개할 예정이다. | 강보람 기자 |

시선, 베트남 통관

2025년 8월 11일 또 럽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관세·통관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KOTRA 무역관, 이여람 관세사에게 베트남의 강화된 통상 규제에 관한 실무적 조언을 들었다.

원산지 검증 강화한 베트남 세관, 이제 생산공정까지 본다

원산지·불법 환적 통합 검증 지침으로 본 중점 검증 대상과 수출기업 대응법



이 여 람 | KOTRA 하노이 무역관 FTA 활용센터(관세사)

1. 들어가며

2026년 6월 16일, 베트남 세관총국(Customs Department)은 공문 제17552/CHQ-GSQL호(이하 '공문 제17552호')를 발표하고, 전국 세관에 상품의 원산지, 라벨링 및 불법 환적에 대한 검사·감독 기준을 통일해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공문은 법률이나 시행령처럼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은 아니지만, 기존 원산지 관리 관련 지침을 대체하고 세관의 검사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통관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문은 서류심사, 실물검사, 생산시설 현장 확인, 통관 후 조사 등 원산지 검증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특히 원산지 사기와 불법 환적 방지를 위한 세관의 관리 방향과 중점 관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하거나 베트남을 경유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도 원산지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왜 지금, 원산지에 주목하는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들은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회수출과 원산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최근 원산지 허위신고와 관세회피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2026년 7월에는 수입·무역·관세 사기를 전담하는 GTCES(Global Trade Enforcement Section)을 신설하는 등 무역집행을 확대했다.¹⁾

이러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베트남정부도 원산지 사기와 불법 환적을 방지하고 ‘Made in Vietnam’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이후 원산지 우회수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커지자,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원산지 관리 및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 절차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원산지 사기 및 불법 환적 단속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했다.²⁾

이와 같은 정책 기조 아래 최근 발표된 공문 제17552호는 서류심사부터 실물검사, 생산시설 현장 확인 및 통관 후 조사에 이르기까지 원산지 검증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내부 업무지침으로 볼 수 있다.

3. 세관은 실제 무엇을 확인하는가?

공문에 따르면 베트남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단순히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와 실물, 생산공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상품명, 원산지, HS Code, 모델명, 수량 및 제품 코드 등을 송장, 계약서, 생산자료 등과 대조해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화장품 수출기업의 경우, 베트남 세관이 원산지와 품목 관련 서류를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면서 수입통관이 평소보다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세관이 단순한 서류 구비 여부를 넘어 제출 서류 간의 일관성과 신뢰성까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산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동일 기업뿐만 아니라 동일 품목을 수입한 다른 기업의 HS Code 신고 내역까지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검증의 범위를 기업 간 신고 내역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관은 수입신고 내역과 수출신고 내역을 연계해 원재료의 사용 내역과 생산공정의 합리성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부터 생산,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일관성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Justice Department Launches Global Trade Enforcement Section(2026.7.14.); Reuters, Dept. of Justice launches new trade fraud enforcement unit(2026.7.14.)

2) Directive No. 09/CT-BCT(2025.4.15.),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실물검사 단계에서는 제품과 포장에 표시된 원산지과 신고 내용을 대조하고, 생산공정 및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원산지를 판단한다. 즉, 제품에 ‘Made in Vietnam’, ‘Produced in/by Vietnam’ 또는 ‘Origin Vietnam’ 등의 원산지 표시가 부착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베트남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위 원산지 표시 또는 우회수출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시설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어, 기업은 통관 시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생산공정 및 원재료 관리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공수출(E52), 수출용 제조(E62) 등 위험도가 높은 수출 유형은 통관 이후에도 사후조사를 실시해 생산공정과 원재료 조달 내역 등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다수의 제조기업들은 가공수출(E52) 및 수출용 제조(E62) 유형을 활용하고 있어,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도 원산지와 생산공정에 대한 사후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베트남 세관이 노리는 5가지 유형&10대 품목

공문 제17552호는 세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원산지 사기 및 불법 환적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실질적인 생산이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가공 없이 단순 조립 또는 포장만 수행한 뒤 제품에 ‘Made in Vietnam’ 등을 표시해 수출하는 경우다.

둘째, 여러 법인을 활용해 부품을 분산 수입한 후 간단한 조립만 수행하고 최종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방식이다.

셋째, 외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한 뒤 별도의 실질적인 생산 없이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다.

넷째,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수입 원재료 사용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발급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다.

다섯째, 실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베트남산으로 표시하거나 신고해 수출하는 경우다.

아울러 원산지 사기 및 불법 환적 위험이 높은 중점 관리 품목도 제시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목재 및 목재제품, 철강제품, 전자제품,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태양광 패널, 리튬배터리, 타이어, 신발·핸드백, 식품, 농산물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공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해당 품목은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위험도를 고려해 추가 품목이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수출에서는 B11(일반 수출), E52(가공수출), E62(수출용 제조), C12(보세창고 수출), 수입에서는 A11(일반 수입), A12(생산용 수입), E31(수출용 생산 원재료 수입), E21(가공용 원재료 수입) 등의 통관 유형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러한 품목이나 통관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원산지 위반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관의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기업은 원산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공정 및 원재료 조달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5. 우리 기업의 주요 리스크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한국이나 제3국에서 원재료와 부품을 수입한 후 베트남에서 가공·조립해 미국이나 EU 등으로 수출하는 생산구조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생산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관은 HS Code 분류의 적정성, 원재료 조달 내역, 생산공정 기록, 원산지 표시, 원산지증명서 신청자료와 세관 신고자료 간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거나 관련 자료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소명 요구, 실물검사, 생산시설 현장조사 및 통관 후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과 EU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서의 원산지 관리 수준 역시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통관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문 제17552호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법령이라기보다 세관의 검사·감독 기준을 구체화한 내부 업무지침이다. 그러나 **베트남 세관이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식이 단순한 서류 확인에서 생산공정과 원재료 조달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세관은 세관신고서, 송장, 계약서, 생산자료, 제품 라벨, 생산공정 및 원재료 조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기업의 과거 수입신고 내역과의 비교, 생산시설 현장조사, 통관 후 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관의 원산지 검증 범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미국 관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갈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2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잇달아 내놓은 관세조치의 근거법과 주요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정리 및 인포그래픽: 주간 관세무역정보)

트럼프의 관세 갈아타기

무역법 301조 대중국 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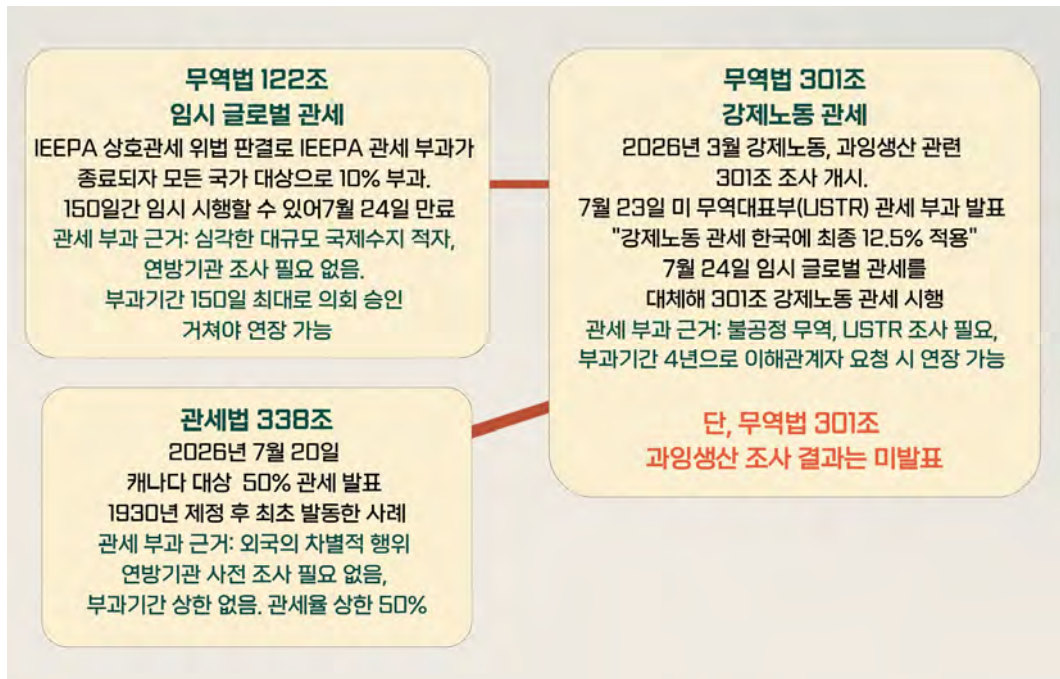
트럼프 1기, 대중국 무역전쟁으로
2017년 8월 301조 조사를 공식 개
시한 이후 2018년 7월 관세 발효.
그후 수차례 확대됨. 무역법 301조는
법적으로 탄탄하다고 평가받음.
4년에 한번 조치 결과를 평가하는
'리뷰'를 진행함.
관세 부과 근거: 불공정 무역
USTR 조사 필요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2025년 3월 12일 철강, 알루미늄
쿼터가 폐지되고 품목관세 25%
부과 시작. 그후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로 인상되고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중대형차량,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대상 확대
시행 중. 폴리실리콘, 무인기,
풍력터빈과 부품, 의료기기,
로봇산업기계 등을
조사 진행 중
관세 부과 근거: 국가안보 위협
상무부 조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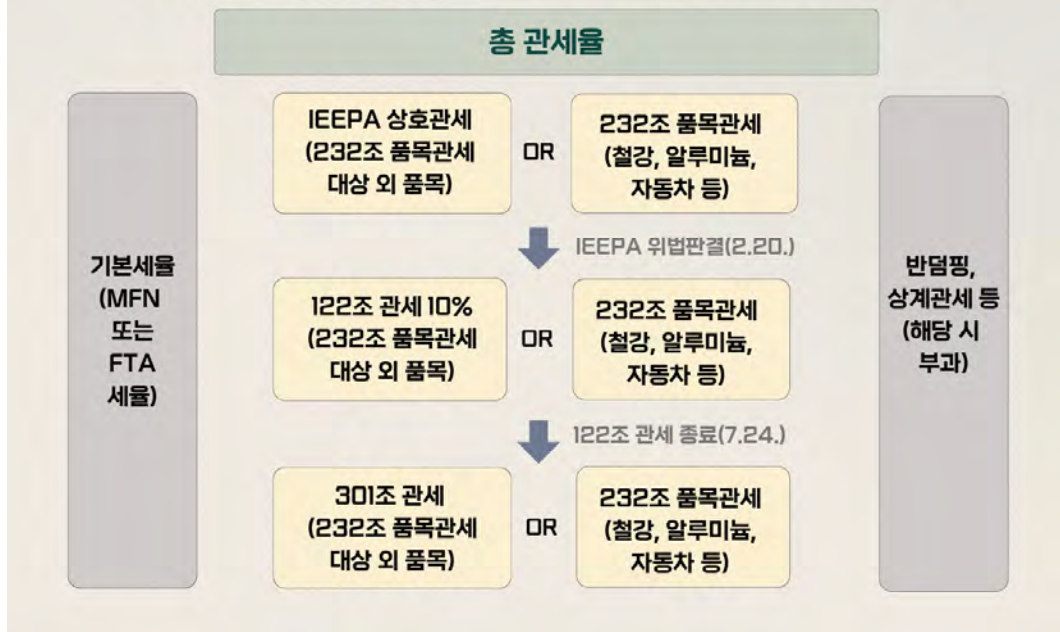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

2025년 4월 상호관세 발표.
국가별 차등 부과된 것이 특징이며,
한국은 협상으로 15% 적용.
2026년 2월 20일 대법원 위법
판결로 환급 진행 중
관세 부과 근거: 국가비상사태,
연방기관 조사 필요 없음



대미 수출 관세 적용 방식

기본 세율에 국가별 301조 관세 혹은 232조 품목관세가 추가 적용되는 구조



질의 응답 사례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특수통관 /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 확인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 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하나요?.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자, 정보변경자는 해외 직구 시에 입력하는 수하인의 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정보 일치를 확인하게 되며, 이는 2026년 2월 2일 통관 건부터 해당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접수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내용
(기존)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변경)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주소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목록통관 수하인 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영문명 확인
- 시행일: 2026년 2월 2일 통관 건부터 시행
- 강화 대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변경일(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자, 정보변경자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화면 변경 내용: 영문 성명, 국적, 이메일, 배송주소는 20건까지 등록

변경일 이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았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검증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630)로 문의해 안내받기 바랍니다.

FTA /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필리핀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발급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 서류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 최초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원본(사본 및 전자본 대체 가능)
-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갈음 서류(발급기관에서 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최초 수입 시 수입신고필증 사본
- 최초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
- 양수도 사실 및 거래 수량(국내 양수도 물품으로 한정)

다만, 수출관리 부호가 72(원상태 수출), 78(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 79(중계무역수출), 93(수입물품 계약상이로 반출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5, 6번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고, 국내 양수도 물품이 아닐 경우 7번 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

품목분류 / 찐 쌀의 HS Code

인도산 바스마티 라이스(찐 쌀 100%)의 HS Code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찌거나 삶은 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904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번호	품명	적용 기준
21	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해당 규정에 모두 충족되는 찐 쌀에 해당된다면 제1904.90-1010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멥쌀’이 분류되는 제1006.30-1000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제1006호의 경우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W1 세율은 5%이지만, 미추천 W2는 513%로 고세율이 적용되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수출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수리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① 법 제243조 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이하 ‘보세구역 등’ 이라 한다).

1.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2. 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3.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받은 곳
- ② 영 제24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품은 별표 7과 같다.
- ③ 영 제248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 대한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별표 1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른 물품을 수출신고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보세구역 등의 반입정보(컨테이너번호, 장치장소, 반입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⑤ 보세구역 등 반입대상 물품이 검사로 지정된 경우 수출검사 담당 직원은 다른 물품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4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도난 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 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HS 2028 개정으로 본 폐기물 품목분류 변화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유해 폐기물·페타이어까지, 주요 개정사항 점검

이 희 영 | 중앙관세분석소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1. 서론

이번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HS 2028(제8차 개정)은 2025년 6월 관세협력이사회(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의 승인을 거쳐 확정됐으며, 이에 따른 해설서 개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1월 개최 예정인 HS 검토소 위원회(RSC, Review Sub-Committee)에서 최종 검토될 예정이다.

최근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화로 국가 간 폐기물 이동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바젤협약¹⁾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국제적으로 통제·관리되고 있다. 해당 협약은 1989년 채택돼 1992년 발효돼 현재 한국을 포함한 19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바젤협약 사무국 등은 폐기물의 국제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WCO에 HS 품목분류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이러한 요구는 HS 개정 과정에 반영돼 폐기물 관련 분류체계의 정비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HS 2022에서는 전기·전자 폐기물(e-waste)을 별도로 분류하기 위해 제8549호가 신설됐다. 이는 기존 제8548호에 혼재돼 있던 전기·전자 폐기물을 분리해 독립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수명 종료 여부 및 재활용 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제8549호는 전기·전자 제품이 수명 종료 상태에 이르러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회수·재활용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수리·재사용·재제조가 가능한 물품이나 단순한 중고품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류체계와 구별된다.

이러한 개정 흐름은 HS 2028 개정으로 이어져, 플라스틱 및 고무 폐기물에 대한 품목분류 체계가 추가로 정비됐다. 특히 바젤협약 및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플라스틱 오염 및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대화(DPP, Dialogue on Plastics Pollution)’ 등 요청을 반영해 제39류 플라스틱에서는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제 이동 관리뿐만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생분해성 및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 환경적 특성을 가진 물품에 대한 세분화가 이뤄졌다. 또한 제40류 고무에서도 폐공기타이어 및 재생고무에 대한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 폐기물과 재활용 원료 간의 구분을 체계화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HS 2028 개정 중 폐기물 관련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해 그 배경 및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개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HS 2028 개정 폐기물 관련 신설 호

WTO의 ‘플라스틱 오염 및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대화’ 요청에 따라, WCO는 제39류 원재료를 시작으로 HS 전반에 걸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관련 개정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잠재적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 단계 이전부터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과정을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폐기물 관련 규제와도 밀접하

1)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규제해 불법 이동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

게 연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제39류 주 제3호에 ‘일회용(single-use)’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한 번 사용된 후 폐기되거나 재활용되는 것으로서,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품으로 정의했다. 또한 제3917호에는 ‘일회용 음료용 빨대’를, 제3923호 각 소호에는 ‘일회용의 것’을 세분류했으며, 제3924호에는 ‘일회용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제3926호에는 ‘일회용 장갑과 병어리장갑’을 각각 소호로 신설했다.

또한 제65류 주 제2호에 “제65류에서 ‘일회용’이란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그 밖의 모자가 분류되는 제6506호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것’을 소호로 신설했다. 이외에도 제5601.23호에는 ‘플라스틱 막대가 달린 면봉’을, 제9503.10호에는 ‘풍선’을 각각 신설했다. 현재는 ‘일회용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39류 총설, 제3917호의 ‘경질’ 관련 설명 및 제5601호의 ‘플라스틱 막대가 달린 면봉’ 등에 대한 해설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일회용(Single-use) 관련 품목분류표 신설 내역 ●

현행(HS 2022)			개정(HS 2028)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2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		2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
				24	일회용 음료용 빨대
	3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		3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
				34	일회용 음료용 빨대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1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1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11	일회용[발포(셀룰러)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것]
				12	일회용(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9	기타
	20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2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22	일회용(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23	일회용(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4	기타(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3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3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31	일회용

현행(HS 2022)			개정(HS 2028)		
			39	기타	
	5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51	일회용	
			59	기타	
	90	기타	9	기타	
			91	일회용	
			99	기타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10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삭제>	
			2	일회용의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21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22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2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2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21	일회용 장갑과 병어리장갑	
			29	기타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9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삭제>	
			92	고무로 만든 것	
			93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4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다음으로, 플라스틱의 일차제품이 분류되는 ‘제3907호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및 ‘제3911호 천연중합체’ 소호에 폴리에스터 계열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플라스틱 일차제품이 세분화됐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플라스틱 일차제품에 대한 무역 규모와 동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907호에는 생분해성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PBS) 및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며 특정 조건에서 가수분해에 의한 열화 특성을 나타내는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코-테레프탈레이트)(PBAT), 그리고 PET의 대체 소재로 알려진 폴리(에틸렌 푸란-2,5-디카복실레이트)(PEF)가 주로 바이오 기반 원료로 제조되는 폴리에스테르로서 각각 6단위

소호로 신설됐다.

또한, 미생물에 의해 생합성되는 고분자인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s)와 폴리(3-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코-3-하이드록시발레레이트)(PHBV)는 천연중합체가 분류되는 제3913호에 각각 소호로 신설됐으며, 이들 물질 역시 생분해성 특성을 갖는다.

● 플라스틱 원료의 품목분류표 신설 내역 ●

현행(HS 2022)			개정(HS 2028)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5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91	불포화의 것
				92	폴리(부틸렌 숙시네이트)(PBS)
				93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PBT)
				94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코-테레프탈레이트)(PBAT)
				95	폴리(에틸렌 푸란-2,5-디카복실레이트)(PEF)
				99	기타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0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10	알긴산과 그 염·에스테르
				2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HAs)
				21	폴리(3-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코-3-하이드록시발레레이트)(PHBV)
				29	기타

또한, 관세율표상 플라스틱 폐기물이 분류되는 제3915호의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HS 2028 개정안이 확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제3915.40호에 특정 유해 폐기물 관련 소호를 신설하고, 분류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소호 주 제2호에 구체적인 물품을 규정하는 등 제3915호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 체계를 정비했다.

제39류 소호 주 제2호에 규정된 제3915.40호 분류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제39류 소호주:

1. 이 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 <중략> ...

※ 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3915호의 소호 분류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서로 다른 폴리머의 웨이스트(waste) 혼합물은 소호 제3915.40호, 제3915.69호, 제3915.91호 또는 제3915.99호 중 해당하는 소호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2. 소호 제3915.40호는 다음의 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제3915호의 물품(첨가제나 오염물질로 존재하는지에 상관없으며 해당 물품이 유해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정한다)만을 포함한다. 금속 카보닐, 베릴륨과 그 화합물, 6가 크로뮴 화합물, 구리 화합물, 아연 화합물, 비소와 그 화합물, 셀레늄과 그 화합물, 카드뮴과 그 화합물, 안티모니와 그 화합물, 텔루륨과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탈륨과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무기 불소 화합물(플루오르화칼슘은 제외한다), 무기 시안화물, 산성 용액이나 고체 형태의 산, 염기성 용액이나 고체 형태의 염기, 석면(분진과 섬유), 유기인 화합물, 유기 시안화물, 페놀과 그 화합물(클로로페놀을 포함한다), 에테르, 유기용제, 폴리염화 디벤조푸란의 모든 동족체, 폴리염화 디벤조-p-다이옥신이나 유기 할로겐 화합물의 모든 동족체.

이 소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다음의 유해 특성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내야 한다. 폭발성, 인화성(액체 또는 고체), 자연 발화성, 물과 접촉 시 인화성 가스 발생성, 산화성, 유기 과산화물 함유, 급성 독성, 감염성, 부식성, 공기 또는 물과 접촉 시 유독 가스 방출성, 독성(지연성 또는 만성), 생태 독성, 또는 폐기 후 상기 특성 중 하나를 갖는 다른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제39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물질은 바젤협약 부속서 VIII에 따른 통제 대상 유해 폐기물 목록(List A)에 해당한다. 부속서 VIII은 폐기물을 구성성분에 따라 A1부터 A4까지 세분류하고 있으며, A1은 '금속 및 금속 함유 폐기물', A2는 '주로 무기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속 및 유기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 A3은 '주로 유기 성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속 및 무기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 A4는 '무기 또는 유기 성분을 함유할 수 있는 폐기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분류체계에 따르면, 금속 카보닐 및 6가 크로뮴 화합물을 구성성분으로 포함하는 폐기물은 금속 및 금속 함유 폐기물에 해당하는 A1040 코드로 분류되며, 폐석면(분진 및 섬유)은 A2050 코드로 분류된다.

이러한 국제적 관리 체계에 따라, 한국은 바젤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 이행을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출입규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품목분류표 신설 내역 ●

현행(HS 2022)			개정(HS 2028)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3915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삭제>
	2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삭제>
	3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삭제>
			4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물품
			5		기타[하나의 비할로겐화 중합체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오염물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51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2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3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4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5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6		폴리카보네이트
			57		폴리에테르
			58		요소-포름알데히드 수지,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수지, 에폭시 수지, 알키드 수지
			59		기타
			6		기타[할로겐화 중합체(할로겐화 중합체와 비할로겐화 중합체로 구성된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함유하는 것]
			61		염화비닐의 중합체만으로 구성된 것
			62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웨이스트(waste)로서 다음의 플루오르화 중합체 중 하나로만 구성된 것[오염물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퍼플루오로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퍼플루오로알킬비닐 에테르) 공중합체,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퍼플루오로메틸비닐 에테르) 공중합체, 폴리(비닐 플루오라이드), 폴리(비닐리덴 플루오라이드)
			69		기타
	90	기타	9		기타
			91		다음의 중합체 중 두 가지 이상으로만 구성된 혼합물[오염물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99		기타

다음으로, 제40류로 분류되는 고무 폐기물에 대한 소호 체계 개정이 이뤄졌으며, 해당 개정안 역시 바젤협약 사무국에서 제안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11호는 제4012호에서 폐공기타이어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주 제7호는 제4012호에서 제외된 폐공기타이어를 제4004호에 분류하도록 한 규정이다. 또한 주 제6호는 제4004호에 해당하는 폐공기타이어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기계적인 공정을 통해 회수된 가루나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경우 제4003호에 분류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관세율표 제4003호는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규정한 회수한 고무 가루와 알갱이’로, 제4004호는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 들의 가루와 알갱이[제4003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함께 개정돼 고무 폐기물과 회수한 고무 간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했다.

폐공기타이어는 제조 과정에서 금속 성분이나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되며,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국제적 관리 대상 폐기물이다(국내 수입 시 허가 대상). 따라서 이번 개정은 폐공기타이어의 제시 상태 및 가공도에 따른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생 원료와 폐기물 간의 분류를 체계화하고, 이들의 국제적 이동 및 재활용 현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제40류 주:

6. 제4003호에서 ‘회수한 고무 가루와 알갱이’란 제4004호의 물품에서 회수한 가루와 알갱이로서 고무 재료로서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물품은 유동성이 있고 균질하며 균일한 고무 가루나 알갱이이며 방직용 섬유·금속이나 그 밖의 오염물질을 대부분 제거한 것으로서 세척·과립화나 분쇄 등의 기계적 공정을 통하여 얻은 것이다.
7. 제4004호에서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s)·스크랩(scrap)’이란 고무 및 고무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서 발생한 것으로 절단·마모·결함이나 그 밖의 이유로 명백히 고무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재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절단하지 않은 공기타이어를 포함한다.

... <중략> ...

11. 제4012호에서 ‘재생(retreaded) 또는 중고 고무 공기타이어’에는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폐(廢)공기타이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호주 :

1. 소호 제4004.10호는 본래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모·결함이나 그 밖의 이유로 타이어로 사용하거나 재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기타이어를 포함한다. 이러한 타이어는 통상 베일(bale) 모양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러한 타이어를 조각으로 절단한 경우(예: 파쇄·절단·분쇄나 이와 유사한 공정을 거친 것)에는 이 소호에서 제외한다(소호 제4004.90호).

● 페타이어 관련 품목분류표 신설 내역 ●

현행(HS 2022)			개정(HS 2028)		
4003	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3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규정한 회수한 고무 가루와 알갱이
				1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20	제4004호의 폐(廢)공기타이어로부터 회수한 고무 가루와 알갱이
				90	기타
4004	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 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004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제40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폐(廢) 공기 타이어
				90	기타

3. 맺음말

지금까지 폐기물과 관련된 HS 2028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다. 현재 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해설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시에 HS 2033 개정을 위한 품목분류 체계 개선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HS 2033 개정 논의에서는 호 및 소호 신설 시 고려되는 무역 규모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소호 신설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무역량 확보(미화 1억달러 초과)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협약 사무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개정은 무역 규모와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정이 전체 개정 논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관리 필요성에 따른 품목분류 개정이 해당 국제기구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HS 체계의 기본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 분야의 경우 수입 단계에서 물품의 구성성분, 발생 경위 및 처리 목적 등 품목분류에 필요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분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관련 회의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특히 분석에 의존한 품목분류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분류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식물성 추출물일까? 마테 추출물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품목분류 사례와 관련 없음(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마테는 남아메리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지가 원산지인 감탕나무과의 상록수인 '예르바 마테'의 잎과 작은 가지를 건조해 만든 식물이다. 예로부터 남미 원주민들 사이에서 활력을 주는 '신의 음료'로 불리며 일상적으로 소비돼 온 마테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남미의 녹차'로 널리 알려지며 그 가치를 재조명 받고 있다.

마테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 안에 함유된 복합적인 유효성분 때문이다. 마테에는 카페인과 테오브로민 등의 알칼로이드 성분을 비롯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클로로겐산, 사포닌,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이러한 화학적 조성은 마테 특유의 짭컌름한 풍미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 항산화, 피로회복 등 기능성 원료로서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자연 상태가 아닌 가공된 추출물 형태의 교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통관 현장에서 마테 추출물이 관세율표상 포괄적인 식물성 추출물(제1302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마테 추출물 95%에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해 분무 건조한 적갈색 분말로 ‘식물성 추출물’에 해당하는 제1302.19-9099호로 신고했다.

제1302호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이 해설서 (A)부분 끝에 열거된 제외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허나, 제1302호 제외규정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열거된 다음의 식물성 생산품은 제외한다. ... <중략> ... (c) 커피·차(茶)·마테(maté)의 추출물(제2101호) ... <후략>”

마테의 추출물은 다른 호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식물성 생산품으로 제13류에서 제외돼 제2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20호에 ‘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마테 추출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정정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YERBA MATE LEAF EXTRACT	제1302.19-9099호 (A 8%)	Mate extract	제2101.20-9090호 (A 40%)

EVENT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선착순 도서 증정 이벤트

2026.3.20~소진 시까지



100명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미국 품목별 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 분석’ 도서 증정

이벤트 안내

진행 기간: 3월 20일(금)~소진 시까지

참여 대상: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주문 고객

꼭 확인해 주세요

-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리며, 주문시기에 따라 도착 예정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부 이상 주문하더라도 증정 도서는 주문자(기업)당 1부씩 보내드립니다.
- 주소 등 개인정보 오기입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이벤트는 선착순 증정 이벤트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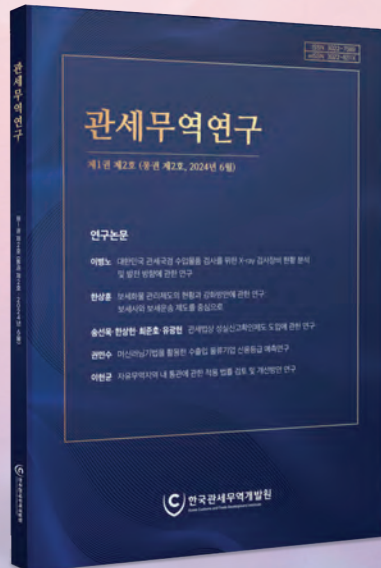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